

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

-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!
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 옥재은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- 현행 「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」 제17조제1항은 세계스마트시티기구(WeGO)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‘기구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’와 ‘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기구 사무국 파견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그러나 세계스마트시티기구의 안정적인 사무국 운영과 서울시가 지원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지원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- 개정안의 내용으로는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지원사항에 ‘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’ 및 ‘그 밖에 기구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’을 추가하여 지원범위를 명확화하였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
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
부탁드립니다.

○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